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-37 호

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9일

상 주 시 의 회 의



「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상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「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중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으로 인한 위원회 소관 부서 반영
(안 제3조제2호, 제3호)
- 나.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 직무대행에
관한 사항 신설(안 제 11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6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thgus524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) ⇨ 의정소식 ⇨ 조례안 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

성명(단체명):

주 소:

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건	비 고